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1일

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5조의2(구정질문) ① 의원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"구정질문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늦어도 일괄질문의 경우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  - 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## □ 개정이유

구정질문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함으로써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문일 답 방식을 추가하여 구민에게 구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자 함

## □ 주요내용

구정질문의 형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일괄질문의 경우는 24시간 전까지 그리고 일문일답의 경우는 48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함 (안 제65조의2)